

인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2270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영은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박병주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3.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6.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7. 2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대출금액 1,8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이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D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이 2019. 5. 18.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D는 2019. 6. 22.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8. 30. D에 보험금 10,434,784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020. 4. 24.를 기준으로 11,085,019원(= 원금 10,434,784원 + 지연손해금 586,626원)이다.

라. C의 어머니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9. 6. 2. 사망하자, 망인의 남편 F, 자녀 피고, C, G은 2019. 6. 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9. 7.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회신 결과, H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에 대한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남편인 F의 자금으로 마련하였으나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망인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또한 피고는, F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망인의 상속인들은 F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F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F이 자신의 병원비 조달과 병간호 등을 위한 대비책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그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화정

별지